취창업운영위원회 규정

제정 2014.03.01. 전문개정 2017.12.04. 개정 2023.03.16.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수원여자대학교(이하 "본 대학"이라 한다) 취창업운영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**제2조**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내외로 구성하고, 산학취업처장을 당연직으로 한다. <개정 2023. 3. 16.>
 - ② 위원장은 산학취업처장으로 한다. <개정 2023. 3. 16.>
 -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, 당연직 위원의 경우 임기는 보직 임용으로 한다.
- 제3조(회의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, 의장이 된다.
 -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- ③ 위원장은 가부동수일 때 결정권을 갖는다.
- 제4조(심의사항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- 1. 연간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<개정 2023. 3. 16.>
 - 2. 제 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 <개정 2023. 3. 16.>
 - 3. 연간 사업에 대한 평가 및 환류에 관한 사항 <개정 2023. 3. 16.>
 - 4. 취·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
 - 5. 취·창업 교육에 관한 업무, 결과 분석, 평가 및 환류개선에 관한 사항
 - 6. 외부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
 - 7. 기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<개정 2023. 3. 16.>
- 제5조(사무) ① 위원회의 사무는 취창업지원팀에서 담당한다.
 -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며,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고 보관한다.
- 제6조(기타)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.

부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.